

「서예진흥법」 시행령 및 시행규칙(안)

법률	시행령(안)	시행규칙(안)
<p>제1조(목적) 이 법은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국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, 문자영상 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서예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서예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서예”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,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.</p> <p>2. “서예교육”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,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.</p>		
<p>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		
<p>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서예진흥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서예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</p> <p>2. 서예 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법령·제도의 개선</p> <p>3.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</p>	<p>제2조(서예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「서예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 따른 서예진흥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.</p> <p>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</p>	

법률	시행령(안)	시행규칙(안)
<p>4.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</p> <p>5.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</p> <p>6. 서예 진흥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</p> <p>7. 그 밖에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p> <p>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통보해야 한다.</p> <p>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과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p>	
<p>제5조(실태조사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 정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경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서예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·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</p>	<p>제3조(실태 조사의 범위 등)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 교육 등에 관한 실태 조사(이하 “실태 조사”라 한다)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서예 관련 종사자의 현황 2. 법 제7조에 따른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현황 3. 서예 관련 교육 현황 4. 전시시설 등 서예 관련 시설 운영 현황 5. 서예 관련 기관·단체 등 현황 6. 서예 관련 전시회, 경연 대회 등의 운영 현황 7. 서예 관련 시장 현황 8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	

법률	시행령(안)	시행규칙(안)
<p>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,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서예 관련 법령·제도 및 예산 현황</p> <p>9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예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,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,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.</p> <p>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서예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</p>	
<p>제6조(서예교육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·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·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양강좌, 문화강좌 등에서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·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.</p>		
<p>제7조(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,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,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·기관 또는 단체를 인력양성</p>	<p>제4조(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, 평생교육기관, 연구소·기관 또는 단체(이하 “대학등”이라 한다)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(이하 “인력양성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 중 서예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·운영하는</p>	<p>제2조(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) ① 「서예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2항 및 「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, 평생교육기관, 연구소·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</p>

법률	시행령(안)	시행규칙(안)
<p>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(이하 “인력양성기관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.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.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<p>⑤ 그 밖에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요건,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대학</p> <p>2.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서예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·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</p> <p>3.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·기관 또는 단체 중 서예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·기관 또는 단체</p> <p>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2.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을 갖춘 전임교수 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3.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비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을 보유할 것 4. 운영경비 조달능력이 있을 것 5. 서예교육 전문인력이 서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표준강의안 등 교육지침을 제공할 것 <p>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</p> <p>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강의료와 수당 2.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	<p>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. 전임교수 요원 확보 현황 3. 교육장비 및 교육시설 보유 현황 4.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. 표준강의안 등 교육지침 <p>②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임교수 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서예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한 사람 2. 서예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<p>③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”이란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이 총 6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을 말한다.</p>

법률	시행령(안)	시행규칙(안)
	<p>3.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</p> <p>4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예교육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</p> <p>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</p>	
<p>제8조(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, 마케팅 및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)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서예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 2. 국내외 서예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3. 서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·조사·연구·학술교류 및 출판 지원 사업 4. 그 밖에 서예 진흥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	
<p>제9조(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·단체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법인·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법인·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법인·단체의</p>	<p>제6조(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·단체의 지원)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서예문화를 육성·발전시키는 사업 2.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·육성·활용하는 사업 3.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	

법률	시행령(안)	시행규칙(안)
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4.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	
제10조(청문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		
제1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		
부 칙	부 칙	부 칙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	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	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